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 번호	2530
----------	------

정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은평구4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
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
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‘우리동네 동물병원’ 사업,
펫위탁소 운영,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☐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보호 및 돌봄 지원 사업이
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에는
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의 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
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
□ 이에 동 개정안은 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.

□ 추가로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및 위탁보호비 등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